

5.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4. 22.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4. 4. 30.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
다. 상정일자 : 2004. 5. 12.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
제1차자치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 : 환경과장 임병민)

가. 제안이유

-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,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위생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자율적인 참여유도와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·판매장소를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(안 제2조)
-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으로 3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지급. 다만, 동일인이 월2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20만원까지만

지급함 (안 제7조)

-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신고자와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 (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4일 이내)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액의 50%를 감액함 (안 제8조)
-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모든 신고자임. 다만, 식품점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판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, 33m²미만의 판매점에서 봉투 무상제공 행위는 제외함 (안 제9조)
-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 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(안 제11조)
- 신고처리는 신빙성·중복신고 여부를 확인 후, 위반행위자에게 사실확인 요청서 발송 (안 제13조)
-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,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,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

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위생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와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

- 검토결과,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(질문) 오인근, 임영택 위원

- 환경부의 준칙안과 우리시 조례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?
- 33㎡미만 소규모 업소는 현 조례상 규제대상이 아닌가요?

- (답변) 임병민 환경과장

- 제2조로서 환경부의 준칙안은 과태료상한액이 100만원이나 우리시는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정한 것이 다른점입니다.
- 10평 미만의 소규모 업소도 규제대상이며 단,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입니다.

5. 토론요지

- 특이사항 없음.

6. 심사 결과

- 표결결과, 재적위원 9명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, 찬성 6명, 반대1명으로 원안 가결.